

범죄 신고 요령

-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112로 신고하면 경찰로부터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는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시고 언제·어디서·어떻게 피해를 당했으며, 범인의 인상·특징·휴대품·인원·도주 방향 및 교통수단 등을 침착하게 진술합니다.
- 112 신고는 휴대전화(영상통화 가능), 일반전화, 공중전화로 할 수 있으며, 공중전화 긴급통화(빨간색 긴급통화 버튼+112) 이용 시, 동전 없이도 가능하며 범죄가 아닌 다른 긴급 상황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112신고 시, 3자 통역서비스(경찰관-통역-신고자) 방식으로 범죄(피해) 신고 접수
- 전화통화가 곤란한 경우 '112 긴급신고앱' 또는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2긴급신고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
- 어지럽혀진 범죄 현장은 증거의 확보를 위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보존하고, 경찰관이 현장을 살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요청 전화번호

범죄신고 및 긴급전화	
범죄 신고 (경찰청)	112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청)	117
화재·응급환자·긴급구조 신고 (소방청)	119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 (KISA)	118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1899-3075
미아·가출인 신고 (경찰청)	182
여성 긴급 상담 전화 (여성가족부)	1366
다누리 콜센터 (여성가족부)	1577-1366

기타 생활민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법무부)	1345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행정안전부)	110
외국인 관광 안내 (한국관광공사)	1330
인권침해 진정·상담 (국가인권위원회)	1331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129
청소년 사이버 상담 전화 (여성가족부)	1388

체류 외국인 지원 정책

-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대상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 (특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제46조)
-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범죄(피해)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NGO 단체 등을 '외국인 도움센터' 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절차

1. 외국인 범죄 피해(민원) 발생
2. 외국인 도움센터 신고 또는 상담
3. 외사경찰 접수·상담
4. 경찰서 또는 해당기관 통보·처리

- 외국인 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생활 중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 센터 운영자가 외사경찰관에게 통보 하고, 신고 또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범죄신고 또는 상담 내용별 조치

- 폭행·가정폭력·학교폭력·사기(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관련 신고는 경찰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
- 임금체불·산업재해·체류자격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며,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안내

※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장소는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로 문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예방 교육과 운전면허 학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근로현장 · NGO 단체 등 외국인들이 모인 장소에 직접 방문, 결혼이주여성 · 외국인 근로자 ·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춰, 자주 발생하는 범죄 사례 및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을 운영하고 있으며,
 - 운전면허 학과시험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를 통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언어로 교재 제공)

운전면허시험 관련 문의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www.safedriving.or.kr, 1577-1120
- 학과시험
3개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응시가능

※ 범죄예방교실과 운전면허교실은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로 문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범죄(피해) 신고 및 민원 상담 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

- 관광통역안내 1330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24시간)
-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08:00~19:00)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24시간)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13개 언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1661-2025
타이어·인도네시아어·우루두어 등 20개 언어
- 한국어·영어·중국어(09:00~22:00)
- 베트남어 등 17개 언어(09:00~18:00)
- BBB코리아 1588-5644 (24시간)
터키어·폴란드어·힌디어·말레이어 등 20개 언어

한국어 Korean
www.police.go.kr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가이드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

- 폭행·상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감금·강요·공갈 등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활동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 돈을 걸고 도박을 해서는 안되며,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도박행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 길에 세워진 자전거 등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라도 가져가는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한 해외 송금 행위는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 마약류를 제조·밀반입하거나 소지·투약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 받으며,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 경찰청은 △불법 마약류 공급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위반시 벌금(100만원 이하)이 부과됩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신분을 속이려고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 성 착취물 전송 등의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①인터넷·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을 전송하는 행위 ②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유포하는 행위 ③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 자동차·오토바이 운전 시, 무면허 등 다음의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 처벌조항 ①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② 오토바이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30만원 이하 벌금)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벌칙	행정처분
0.03%이상~ 0.08%미만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0.08%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회 이상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

▶ 처벌조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담배꽂초, 껌,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도로를 건널 때에는 육교나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생활 속의 범죄예방 및 대응 요령

- 사기(불법 다단계 판매,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인터넷사기 등)

- 불법다단계 : 일반적인 도·소매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이 되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 가입 권유에 대해 무조건 거부합니다.
 -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강제구매·대출 등을 유도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 재택 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 상품이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 등록된 합법 업체 여부 확인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044-200-4010
- 직접판매공제조합 www.macco.or.kr, 02-566-1202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kossa.or.kr, 02-2058-0831

- 전화금융사기 :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이체·현금 전달을 요구하거나, 계좌·카드·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 사기단의 허부조작인 현금 인출책, 콜센터 텔레마케터 등의 역할도 사기범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 Voice Phishing 사례

- 가족(자녀)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도하여 납치를 빌미로 금전 요구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및 개인정보 유출 명목으로 금전 요구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존 대출금 상환,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
- 카드사·통신회사를 사칭하여 대금 연체 방지하며 금전 요구

-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거래 전 거래 상대방의 정보(전화·계좌 번호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사이버캅(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이력 검색 및 피해 신고 가능

● 가정폭력·데이트폭력

- 가정폭력·데이트폭력이 발생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을 포함하여 친척·이웃·친구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진·진단서 등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여성단체·심터 등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아동 실종·유괴

-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잘 아는 척 하면서 데려가거나 또는 강제로 데려가려 할 때에는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칩니다.
- 아이에게 본인 이름·나이·주소·전화번호·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외출 시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 둡니다.

●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폭력배에게 금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불법촬영, 성매매 등)

-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씻지 말고 입었던 속옷과 옷을 그대로 보관하고 112에 신속히 신고해 주세요.
- 범인의 특징이나 생김새 등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어두세요.
- 주변에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들어주고, 1577-1366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스미싱(Smishing)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쿠폰 제공' 등의 내용으로 전송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인으로부터 전송된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 절도(빈집털이, 소매치기, 날치기 등)

- 장외출이나 휴가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정기 배달물이 집 앞에 쌓이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 귀금속이나 현금 등 귀중품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시장 등 혼잡한 곳에서는 주의가 산만함 등을 이용, 소지품을 들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청원경찰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